

February 22, 201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주요 내용 소개

지난 2016. 2. 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6. 8. 13.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분야 기업들이 인수·합병 등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세법의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였습니다. 이하에서, 기업활력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봅니다.

1. 적용대상기업 및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승인

기업활력법은 기업규모나 업종을 불문하고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재편을 하는 국내기업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과잉공급’이란 ‘해당 업종의 국내외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또는 향후 상당기간 공급의 증가, 수요의 감소 등으로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비용 대비 제품·서비스의 가격변화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되는 등 기업의 경영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제2조 제4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과잉공급 여부의 판단기준 등을 규정한 사업재편계획실시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제7조 제2항 제2호).

기업활력법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재편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주무부처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재편을 통해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합니다(제9조 및 제10조). 이처럼 승인을 받은 기업은 신청된 사업재편계획서에 적시된 지원 내용 중 주무부처의 장이 구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따라서 기업활력법에 의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단,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생산성 향상보다는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구조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제10조 제6항), 이미 승인을 받은 사업재편계획의 목적이 사후적으로 위와 같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13조 제1항 제2호).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사업재편계획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 및 주무부처의 장의 각종 고려사항(신규고용 및 투자창출 가능성, 산업구조 고도화 가능성, 근로자의 이익 부당침해 여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신청기업 사업규제 관련 법령상 제반 이슈에 대한 사전 검토와 주무부처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기업활력법 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기업활력법 상 지원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내용

기업활력법의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사항은 ①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대한 특례, ② 공정거래법에 대한 특례, ③ 세제 및 자금지원 및 ④ 규제해소 지원으로 구분되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항목	주요 특례사항
상법 및 자본 시장법에 대한 특례	소규모 분할 (제15조)	■ 분할 후 설립되는 회사의 총자산액이 승인기업의 총자산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 승인기업의 주주총회 승인을 <u>이사회 승인</u>으로 대체 가능 ※ 단, 사업재편계획 기간 중 1회에 한함
	소규모 합병 등 (제16조)	■ 소규모 합병(분할합병 포함)의 요건 완화(합병대가인 주식의 총수가 합병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때→<u>100분의 20</u>을 초과하지 않는 때) ■ 소규모 주식교환 또는 소규모 합병에 대한 반대주주의 요건 완화(완전 모회사 또는 합병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주주→<u>100분의 10</u>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소유한 주주)
	간이합병 등 (제17조)	■ 간이합병(분할합병 포함)의 요건 완화(합병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 소유→<u>100분의 80</u> 이상 소유)
	합병등 관련 절차 (제18조)	■ 합병, 분할·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영업양도 및 양수(이하 “합병등”) 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작일, 관련서류 본점 비치 시작일, 주주명부의 폐쇄일 및 기준일 공고 시작일 일괄 단축(2주전→<u>7일</u> * 전)
	채권자보호 절차 (제19조)	■ 합병등의 경우,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단축(1개월→<u>10일</u> * 이상의 기간) 및 승인기업이 채무에 대한 은행 지급보증 또는 보험증권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채권자보호절차 관련 규정 미적용
	주식매수청 구권 (제20조)	■ 합병등의 경우,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가능기간의 단축(주총결의일부터 20일 이내 청구→주총결의일로부터 <u>10일</u> 이내 청구) 및 회사의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상장법인 1개월→<u>3개월</u>, 비상장법인 2개월→<u>6개월</u>)
공정 거래 법 에 대한 특례	지주회사 규제 (제21조)	■ 지주회사의 부채비율(200% 이하), 자회사주식 보유기준(상장법인 20%, 비상장법인 40% 이상), 비계열사 지분보유 규제(5% 이하) 규정 3년간 미적용

	지주회사의 자회사 규제 (제22조)	- 자회사의 손자회사주식 보유기준(상장법인 20%, 비상장법인 40% 이상) 규정 3년간 미적용 (일정한 요건 하에) 자회사의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 3년간 미적용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규제 (제23조)	(일정한 요건 하에) 손자회사의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 3년간 미적용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승인기업 규제 (제24조)	합병등에 의한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해소기간 연장(6개월→<u>1년</u>)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소속 승인기업 규제 (제25조)	승인된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보증 3년간 허용
세제 및 자금 지원	세제지원 (제27조)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의 과세특례 규정
	자금지원 (제28조)	- 사업재편에 필요한 자금 보조, 융자 또는 출연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승인기업의 경우 미적용
	기타 사항 (제29조 내지 제31조)	연구개발 활동,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혁신,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 등 지원
규제애로 해소 지원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확인 (제32조)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주무부처에 대한 법령 등의 해석·적용 확인 요청 가능
	기업제안에 의한 행정규제 개선 요청 (제33조)	신청기업 및 승인기업은 규제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보완방안을 주무부처에 제출하여 규제개선 요청 가능

* 기간산정 시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

3. 시사점 및 향후 전망

기업활력법은 주로 공급과잉에 직면한 국내 업계의 사업재편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과잉공급 기준 등 기업활력법의 주요 사항의 일부 내용이 대통령령과 세부지침 등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향후 그 제정 내용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그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기업활력법의 지원이 적용되는 사업재편의 실행 과정에서 통상 사업재편에 적

용되는 상법, 자본시장법 등 여타 법령상 규제 및 상업등기제도와와의 절차적 정합성에 유의하고, 합병계약과 분할계획서 등 사업재편 실행의 기본이 되는 서류에 기업활력법에 따른 특례의 내용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세종은 이러한 이슈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필요한 자문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 김병태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038 | E-Mail. btkim@shinkim.com |
| ● 정준혁 파트너변호사 | TEL. 02 316 4655 | E-Mail. jhchung@shinkim.com |
| ● 김광복 변호사 | TEL. 02 316 4064 | E-Mail. kbkim@shinkim.com |